

2018-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

①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

- '18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자*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(→ 2차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)

* 초과학기 재학생, 기초·차상위 B학점 미만~C학점 이상(C학점 구제 불가자 한정), 장애인 C학점 미만

② 1유형 지원 단가 인상

- 소득 6분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(736백만원)의 절반 이상 지원

【1유형 연간 지원단가 변경(안) (단위 : 만원)】

구분	기초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
'17년(A)	520	520	520	390	286	168	120	67.5	67.5
'18년(B)	520	520	520	520	390	368	368	120	67.5
차이(B-A)	0	0	0	130	104	200	248	53	0

③ 성적 기준 : 기초·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,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

구분	장애우	기초, 차상위	1~2분위	3분위*	4~8분위
'17년	C학점 이상	B학점 이상 (C학점 경고제 2회)	B학점 이상 (C학점 경고제 2회)	B학점이상	
'18년	전면 폐지	C학점 이상	B학점 이상 (C학점 경고제 2회)		B학점이상

* '중위소득 70% 이하에 대한 분위 평가 변경('17년 2분위 → '18년 3분위)에 따라 C학점 경고제 대상을 3분위까지 변경

④ 초과학기 제한 폐지(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)

구분	누적 수혜 횟수 8회 이하	누적 수혜 횟수 9회 이상
'17년	제한	제한
'18년	지원	

⑤ 다자녀장학금 : 다자녀 가구(자녀 3명 이상)의 모든 자녀*에게 지원

【다자녀장학금 지원 기준 완화】

구분	'17년	'18년
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	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	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
입학연도 폐지	'14년* 이후 입학한 1~4학년	-
연령제한 완화	'93.1.1 이후 출생 (만 23세*)	'88.1.1 이후 출생 (만 29세**)

* '14년 다자녀장학금 도입 시, 1학년 및 만 20세 이하(3생 이하) 기준

**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청년 연령(15세~29세) 인용